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손병기

인종욱

(인)

■ 확인자 : 소광경

이종훈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주)산청	2016.2	GF58387	MSF-1600KFI

근거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7호 가항 4)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6개월마다(21.3.9./청 지침)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 부	
7호 가항 6)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 부	
7호 가항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 부	
8호 가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 부	
8호 다항. 3)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 부	
9호 나항 및 다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 부	영수증
11호 가항 4)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 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부	

※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20개) 후 작성 보관  
 ※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센터장·구조대장 등)

**붙임 1**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신상위*                      *이정우*  
                   *소광경*                      *이종근*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주)산청	2015.6	ALT841-71836	MSF-1600KFI

근거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7호 가항 4)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6개월마다(21.3.9./청 지침)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 부)	
7호 가항 6)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 부)	
7호 가항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 부)	
8호 가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 부)	
8호 다항. 3)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 부)	
9호 나항 및 다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 부)	<i>허위인</i>
11호 가항 4)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 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부)	

※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20개) 후 작성 보관  
 ※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센터장·구조대장 등)

공기충전기 안전관리 등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위 이광우  
 ■ 확인자 : 소방경 이종근

소방서(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관리번호	안전관리자 (자격현황)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주)엠에스엘 컴프레서	2017.12.21	1100010398330	소방위 이해운 소방위 임종욱 소방위 김종술

근거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5호 가항 (공기품질 검사)	○ 공기품질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 '19년 2회, '20년 2회 공인시험기관 검사 현황	(적 / 부)	
6호 나항 (검사결과 관리)	○ 공기품질검사 결과 관리 - 사용 중지, 수리 이력, 검사결과 기록	(적 / 부)	
7호 가항 1)~2)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기 점검대장 기록관리 - 1주일에 30분 이상 가동 여부	(적 / 부)	
7호 가항 3)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공기충전기 필터 연 2회 이상 교체 - 교체 시기 적정성(공기품질 시료채취 전)	(적 / 부)	
9호 다항 2) (고압용기의 파기)	○ 고압용기 파기방법 적정성 - 압착, 절단,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 부)	해당 없음
9호 다항 3) (공기충전기의 파기)	○ 공기충전기 파기방법 적정성 - 주요부 타격으로 파기,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 부)	해당 없음
12호 가항 및 나항 (충전실 및 정비실 관리)	○ 충전실 및 정비실 설비 점검 적정성 - 측정장비 검교정, 정기점검	(적 / 부)	
13호 가항 및 나항 (예비용품 관리)	○ 공기호흡기 10 세트 및 소모품 보유 - 공기충전기 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	(적 / 부)	

※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센터장·구조대장 등) /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센터·구조대 등 자체 보관  
 ※ 충전기 1개당 1개 체크리스트 작성 / 청 표본점검 제출 요청 시 원본 제출